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 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3(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사업양수도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계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의 양수도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사업양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제28조의3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조제3항·제4항 및 제4조 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적용례)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또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